의 안	· 번 호	제	ই
의	결	2023.	
연 -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정 부 조 직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 설치(안 제2조제2항제9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우주 항공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직 등) ① (생 략)	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	②
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	
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u>따른 우주항공청</u>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2